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도로점용료 징수 부과에 관한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별표 3 점용료 부과기준 적용(안 제3조)

나. 제3조의2 삭제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적용

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감면사항 추가(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8. 20 ~ 2015. 9. 9(의견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3”으로 개정하고,

- 안 제4조의 점용료 감면 대상에 제5호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6호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상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제7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며,
- 그 외 관련법령의 제명 등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인 「도로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 주 군 수

2. 개정이유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관한 위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안 제3조제1항)

: 2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8. 20 ~ 2015. 9. 9 (의견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7. 28 ~ 2015. 8. 7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2015. 7. 28 ~ 2015. 8. 12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인 「도로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나.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안 제3, 4조)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안 제5조)
라.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안 제6, 7조)
마.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안 제8조)
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안 제9조)
사.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지원 등(안 제10, 11조)
아.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세부기준 등(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2) 표준 조례안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7710(2012. 06. 14.)
나. 예산조치 : 1,400천원정도(평가단 보험, 수당, 여비 등)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5. 9. 10. ~ 9. 30.(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 안 제3조,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근거
-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제7조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제11조는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입법 입안 삼사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건축·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안 제5조)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안 제6조)
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마.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나. 예산조치 : 2,000천원 정도(표지판 4개소 설치 등)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5. 9. 10. ~ 2015. 9. 30.(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15. 10. 8.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개최 결과 안 제7조 및 제8조에 대해 원안 가결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건축·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목적, 기본 방향,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안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 안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 안 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이며,
- 안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건축법」에 위배 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③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 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고령・성주지역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2. ---------- -- 성주군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 허가권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별표3에서 정하는 산식에 의거 다음 -- 대행수수료 --.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별표3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7(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분의 2, 추후 사용승인 시 10분의 5)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2. ---------- 별표3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70 ---------- 100분의 20, ---------- 100분의 50) ----------.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 15일까지 별지5 서식에 의한 ----------.
③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 15일 ----------.
<신 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고령·성주 지역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제·개정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1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
1. 전면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1. ---------- 12미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 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영 제86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 ---- 제86조제3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 제86조제3항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